#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4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조명희·추경호·권영세

유의동 • 하태경 • 이주환

이태규 · 배현진 · 권성동

김용판 • 윤두현 • 홍문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은 전 세계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자사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콘텐츠의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함.

이와 같은 구글의 정책에 대하여 '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제 금액에서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컨텐츠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상당수 앱·콘텐츠의 소비자 가격이 20~30% 가량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해지·환불 등에 관한 분쟁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고, 금지사항의 유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1항제6호 및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제50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가격, 조건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	설치 및 구성) ①
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	
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	
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
	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u>관한 분쟁</u>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	제50조(금지행위) ①
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	
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의2. (생 략) <신 설>

6. ~ 8. (생략)

②·③ (생 략)

-----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
신서비스의 결제방법, 가격,
조건 등을 부당하게 지정・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6. ~ 8.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